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19. 4.

교 무 처

(입 학 관 리 팀)

1. 2021학년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인원(명)			비고
		정원 내	정원 외	계	
수시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전형)	121	-	121	*성비 적용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40	-	40	-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20	-	20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20	-	20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5	-	5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3	-	3	
	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	-	10	10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	10	10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7	7	
	소 계	209	27	236	-
정시 (나군)	수능위주 (일반전형)	118	-	118	*성비 적용
	소 계	118	-	118	-
총 계		**327**	**27**	**354**	-

※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정원 조정 및 이월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의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전형),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일반전형)은 남·여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1단계 및 2단계 모두 적용함.
(성비적용 중 어느 한성이 부족할 시에는 성비를 적용하지 않음)

※ 수시모집에서 최종 미 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이월하여 충원함.

※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시모집(학생부종합 전형)

가.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이 전형 입학생에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전라남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함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단, 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장애가 있는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등록 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 자(국가보훈처 등록)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함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행정구역(읍·면)의 적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洞)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봄 ※ 검정고시 합격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제외 ※ 부모특이자(사망·이혼·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의 부모)는 아래 부모특이자 적용기준을 따름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호에 해당되는 가구의 학생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차상위부가급여,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 학생)

부모 특이자 적용 기준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 기준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부터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함 (단,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할 때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률상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를 기준함 (단,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할 때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장기 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친권 행사 금지 가처분, 친권상실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함

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명	1단계 (1,000점)	선발 비율	2단계 (1,000점)	선발 비율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전형)	서류평가 100% (1,000점)	300%	1단계 점수 60% (600점) + 심층면접 40% (400점)	100%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를 정성적 종합평가함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평가에 반영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학생부종합 (교직적성우수자전형)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제한 없음)
학생부종합 (전라남도교육감추천전형)	
학생부종합 (광주인재전형)	
학생부종합 (전남인재전형)	
학생부종합 (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다문화가정전형)	
학생부종합 (장애인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	

3. 정시모집(수능위주 전형)

가.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수능위주(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수능응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전형명	1단계(1,000점)	선발 비율	2단계(1,000점)	선발 비율	비고
수능위주(일반전형)	수능 90%(900점) + 학생부 교과 10%(100점)	200%	1단계 점수 90%(900점) + 면접 10%(100점)	100%	수능 백분위 및 등급 활용

※ 백분위 반영 영역 : 국어, 수학, 탐구(2과목)
※ 등급 반영 영역 : 영어(등급별 반영점수), 한국사(등급별 가산점)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합계
반영방법	백분위	백분위	등급 (등급별 반영점수)	백분위	등급 (등급별 가산점)	–
배 점	225점	225점	225점	225점	–	900점
비 율	25%	25%	25%	25%	–	100%
산출공식	$\left(\frac{\text{국어,수학,탐구 영역 백분위 합}}{300}\right) \times 675 + \text{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 + \text{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배점)	225	215	205	195	185	175	165	155	145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가산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은 자유지정이고, **2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

※ 수학 가형 선택 시 해당과목 백분위 점수의 3% 가산점을 부여함

※ 수학 가형 선택 및 한국사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만점)를 초과할 수 있음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및 적용 대상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계
학년별 반영비율	40%	30%	30%	100%
적용 대상자 고교 졸업 년도	2019.2 ~ 2021.2			
반영방법	석차등급 (전과목 반영)			

3)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제외자(비교내신 적용)

- 2018년 2월 이전 졸업자
-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 기타 특이자의 경우 우리대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함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응시유형 선택, 응시기준

전형명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응시유형 선택	응시기준
수능위주 (일반전형)	없음	수학 및 탐구과목 유형 선택에 대한 응시제한 없음	모든 영역에 응시하여야 함 (국, 수, 영, 탐구 2과목, 한국사)